



직장에서의 트랜스젠더의 권리

“트랜스젠더”란 무엇입니까?

트랜스젠더란 태어났을 때 가졌던 성별과 다른 성별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하는 표현입니다. 성별 표현이란 “고정 관념으로 인식되는 타고난 성별에 관계 없이 각 개인의 성별 관련 외모 및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별 인식 및 성별 표현은 공정 고용 및 주택령에 의해 보호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고용주, 주택 공급자 및 사업자는 한 개인이 트랜스젠더 또는 관행과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트랜스젠더이거나 관행과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전환이란 무엇입니까?

- 1 “사회적 전환”이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성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동일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 및 대명사의 변경, 화장실 시설의 사용, 스포츠팀과 같은 활동에의 참여)
- 2 “육체적 전환”이란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별과 신체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호르몬 치료 또는 수술)

각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성 전환과 관련된 특별한 단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성 전환 과정 중의 직원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단계 완수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자주 묻는 질문

고용주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까?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경력, 및 비차별적 질문 이외에 추천인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결혼 여부, 배우자의 이름, 또는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이외에, 개인의 성별을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신체에 관한 질문이나 수술 계획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복장 규정 및 외모 단정 기준을 어떻게 실행하나요? 복장 규정을 요구하는 고용주는 차별이 없는 방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사업상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없다면, 각 직원은 자신의 성별 인식 및 성별 표현에 따라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트랜스젠더 또는 관행과 다른 성별을 가진 직원에 대해 다른 직원과 다른 복장 규정이나 외모

단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실, 샤워어, 락커룸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모든 직원은 성별에 상응하는 안전하고 적절한 화장실 및 락커룸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타고난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의 성별 인식 또는 성별 표현에 상응 하는 화장실이나 락커룸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능하다면, 고용주는 근본적인 이유에 관계없이, 좀 더 사생활을 원하는 어떤 직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용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남녀 공용 화장실의 사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직원도 정책 또는 성별에 적합한 시설에서의 성희롱을 이유로 특정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정부 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체, 공공 시설, 또는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있는 개인용 화장실 시설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불만 사항 제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차별을 받은 일년 이내에, DFEH에 차별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온라인, 메일 또는 이메일로 서면 접수 양식을 제출할 수 없다면, DFEH에서는 접수 내용을 전화상으로 받아 적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자인 경우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 을 통해서 또는 (800) 884-1684 (음성) 로 전화하시면 VRS 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DFEH 는 요청을 받는 경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정하거나 자료 및 웹페이지를 사용하기 위해 선호하는 형태에 대하여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커뮤니케이션 센터 (800) 884-1684 (음성 또는 릴레이 오퍼레이터 711을 통해) 또는 (800) 700-2320 (TTY) 또는 이메일 contact.center@dfeh.ca.gov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정 고용 및 주택부
("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무료 전화 ("Toll Free"): (800) 884-1684
TTY: (800) 700-2320 dfeh.ca.gov



에서도 저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